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병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603

발의연월일: 2021. 1. 22.

발 의 자:한병도·김민철·서영교

강민정 · 김진표 · 이학영

김민석 • 이용빈 • 양기대

김승원 · 오영훈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보건복지부가 발간한 '2019 아동학대 연차보고서'에 따르면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2017년 22,367건, 2018년 24,604건, 2019년 30,045건으로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. 또한 아동학대 발생장소가 주로 가정 내에서발생(2만3883건,79.5%)하고 있고, 주된 학대 행위자가 부모(2만2700건, 75.6%)인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, 보다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사건 대응을 위해 제도 전반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.

특히 아동학대보호전담공무원의 배치 기준 미비, 아동보호전담기관 평가제도의 부재, 전담의료기관과 아동보호전담기관 및 학대피해아동 쉼터의 부족은 효율적인 아동학대범죄 사건 대응에 있어 장애물로 꼽 히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임.

이에,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,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을 의무화하며, 전담의료기관과 학대피해아동

쉼터를 의무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, 아동보호전담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를 시행함으로써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에 나서려는 것임(안 제22조, 제26조, 제29조의7, 제45조, 제47조 및 제53조의2).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4항 중 "두어야"를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두어야"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장은"을 "장, 경찰청장은"으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경찰청장: 제27조의2 각 항의 업무와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1조 각 항의 업무

제26조제2항 중 "고지할 수 있고"를 "고지하여야 하며"로, "실시할 수 있다"를 "실시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제29조의7제1항 중 "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"을 "도지사는"으로, "지정할"을 "지정하여야 하며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조례에 의하여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할"로 한다.

제45조제2항 단서 중 "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"를 "대통령령으로"로, "바에 따라"를 "아동의 수에 비례하여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국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 제47조제1항 중 "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실적에"를 "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아동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"로, "3년마다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"를 "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"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성과평가"를 "아동보호전문기관의 평가 시기, 범위, 방법, 절차"로, "평가결과의 활용 등에"를 "결과의 공개 등 그밖에"로, "대통령령으로"를 "보건복지부령으로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피해아동,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·치료 및 교육 추진과 이행에 관한 사항
- 2.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의 적절성에 관한 사항
- 3.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이행에 관한 사항
-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사항
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.
-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평가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⑤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제53조의2 중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"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"를 "학대피해아동쉼터(이하 이 조에서 "쉼터"라 한다)를 시·군·구에 1개소

이상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"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
- 2. 학대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
- 3. 학대피해아동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,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 적인 의료비 지원
- 4.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하여 아동학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
- 5. 그 밖에 쉼터에 입소하거나 쉼터를 이용하는 학대피해아동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쉼터의 운영업무를 제45조의 아동보호전 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에 따른 쉼터 운영의 위탁과 위탁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⑤ 쉼터의 설치기준·운영 및 인력에 관한 사항과 쉼터의 입소·이용 대상,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(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	제22조(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
의무) ① ~ ③ (생 략)	의무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	4
수・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	
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	
학대전담공무원(이하 "아동학	
대전담공무원"이라 한다)을 <u>두</u>	대통령령
<u>어야</u> 한다.	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두어야-
⑤・⑥ (생 략)	⑤·⑥ (현행과 같음)
⑦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	
수・구청장, 보장원의 장 또는	
아동보호전문기관의 <u>장은</u> 다음	<u>장,</u> 경찰청장
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	<u> </u>
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	
제28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학	
대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	
정보 또는 자료를 활용할 수	
있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4. 경찰청장: 제27조의2 각 항
	의 업무와 「아동학대범죄의
	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

- 제26조(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) ① (생 략)
 -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모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할수 있고,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(이하 이조에서 "신고의무 교육"이라한다)을 실시할 수 있다.

③ • ④ (생 략)

제29조의7(아동학대 전담의료기 전 관의 지정) 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 청장은 국·공립병원,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 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 (이하 이 조에서 "전담의료기 관"이라 한다)으로 <u>지정할</u> 수 있다.

② ~ ④ (생 략)

- 제45조(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저 등) ① (생 략)
 -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

<u>1소 각 항의 업무</u>
제26조(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
대한 교육) ① (현행과 같음)
②
<u>고지하여</u>
<u>야 하며</u>
<u>실시하여야 한다</u> .
③・④ (현행과 같음)
제29조의7(아동학대 전담의료기
관의 지정) ①
<u>도지사는</u>
<u>지정</u>
<u>하여야 하며, 시장・군수・구청</u>
장은 조례에 의하여 전담의료기
<u>관을 지정할</u>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45조(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
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

아동의 치료.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 기관을 시·도 및 시·군·구 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. 다 만, 시·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 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둘 이상의 시·군·구를 통 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 관을 설치 · 운영할 수 있다. ③ ~ ⑤ (생 략) <신 설>

제47조(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 제47조(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 평가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 등) ① ------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실적 에 대하여 3년마다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<u>대통령령으로</u>
<u>아동의 수에 비례하여</u>

- ③ ~ ⑤ (현행과 같음)
- ⑥ 국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- -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아 동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동보호 전문기관에-----다음 각 호 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.
 - 1. 피해아동,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 담ㆍ치료 및 교육 추진과 이 행에 관한 사항
 - 2.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

<신 설>

<신 설>

② <u>성과평가</u> 및 <u>평가결과의 활</u> <u>용 등에</u> 필요한 사항은 <u>대통령</u> 령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제53조의2(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)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 생활가정 중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, 치료, 양육 서비스

- 의 적절성에 관한 사항
- 3.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이행에 관한 사항
-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 된 업무에 관한 사항
- ② <u>아동보호전문기관의 평가</u> 시기, 범위, 방법, 절차----결과 의 공개 등 그 밖에----------보건복지부령으로-----
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.
-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평가 업무를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⑤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3조의2	(학대피해아동쉼터의
지정) ①	

등을 제공하는 <u>학대피해아동쉼</u> -----<u>학대피해아동</u> 터를 지정할 수 있다. 쉼터(이하 이 조에서 "쉼터"라

<신 설>

<신 설>

- ------학대피해아동 쉼터(이하 이 조에서 "쉼터"라 한다)를 시·군·구에 1개소 이 상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- ② 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 와 같다.
- 1.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와 숙식 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
- 2. 학대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 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 유프로그램 제공
- 3. 학대피해아동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,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
- 4.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 복을 위하여 아동학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
- 5. 그 밖에 쉼터에 입소하거나 쉼터를 이용하는 학대피해아 동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렁으 로 정하는 사항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쉼 터의 운영업무를 제45조의 아 동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

	을 지원할 수 있다.
<u> <신 설></u>	④ 제3항에 따른 쉼터 운영의
	위탁과 위탁비용 지원에 관한
	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u> <신 설></u>	⑤ 쉼터의 설치기준・운영 및
	인력에 관한 사항과 쉼터의 입
	소ㆍ이용 대상, 기간 및 절차
	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
	령으로 정한다.